

# 윤리 규정

2001. 2. 8.제정  
2001. 12. 19.개정  
2003. 6. 2.개정  
2004. 1. 6.개정  
2005. 12. 22.개정

## 전 문

이 규정은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인증자의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Financial Planner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.

이 규정은 제1장 윤리원칙과 제2장 관련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, 윤리원칙은 자격인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의 핵심사항으로 기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규칙은 윤리원칙에 근거한 실무지침으로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.

이 규정은 자격인증자 및 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등 자격인증 유자격자와 한국FPSB의 회원 및 한국FPSB와 체결한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윤리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. 이 규정에서 자격인증자라 함은 경우에 따라 자격인증 유자격자 또는 한국FPSB의 회원 또는 윤리규정 준수 의무자 등으로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이 규정은 관련규칙의 조항이 해당윤리원칙의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제1조 성실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규칙은 100에서 199까지의 일련번호로, 제2조 객관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규칙은 200에서 299까지의 일련번호로 조항을 부여하고 있다.

## 제1장 윤리 원칙

### 제1조 성실성의 원칙 (Integrity)

자격인증자는 항상 고객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 객관성의 원칙 (Objectivity)

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건실한 전문가로서의 분별력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**제3조 능력개발의 원칙 (Competence)**

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**제4조 공정성의 원칙 (Fairness)**

자격인증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.

### **제5조 비밀유지의 원칙 (Confidentiality)**

자격인증자는 소송 등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**제6조 전문가정신의 원칙 (Professionalism)**

자격인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업무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업무수행 등 다른 자격인증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**제7조 근면 봉사의 원칙 (Diligence)**

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봉사하여야 한다.

## **제2장 관련 규칙**

### **제100조 성실성 관련규칙**

(101) 자격인증자는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나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) 자격인증자는 소속기관의 규모, 전문분야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) 자격인증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자격인증자의 업무활동 및 능력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기대를 초래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홍보활동이란 연설, 회견, 서적, 인쇄물, 전자출판, 세미나, 라디오 및 텔레비전 출연, 비디오 자료 등을 포함한다.
- 3) 자격인증자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FPSB 또는 다른 단체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- (102)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허위,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103)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) 자격인증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안에서 고객의 금융자산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.
  - 2)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3)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및 기타자산을 수령하는 때에는 법률이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령권한이 있는 고객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하여 정확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- 4)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개인금융 또는 기타자산 (소속법인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 포함)과 공동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고객별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들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.
  - 5)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금융 또는 기타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및 기타자산의 보관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200조 객관성 관련규칙

- (201)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신중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.
- (202)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#### 제300조 능력개발 관련규칙

- (301) 자격인증자는 관련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최소한의 계속교육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(302)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서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해당 고객을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야 한다.

#### 제400조 공정성 관련규칙

- (401)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1)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의 범위, 이해의 상충, 보수체계, 보유자격의 내용, 업무제휴관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
  - 2) 기타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
- (402)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과 보수의 근거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1) 자격인증자의 업무수행 원칙 또는 방침을 밝히는 내용
  - 2) 자격인증자(법인체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소속법인의 대표 또는 고용주 포함)의 학력, 실무경력, 보유자격, 전문분야 등 자질 증명사항을 나타내는 이력사항 및 수행업무의 내역
  - 3) 보수계산에 관한 항목 및 산출 근거 등 상세내역 (소개료가 있는 경우 상세한 내역을 포함한다)
  - 4) 보수계산의 기준이 수수료, 커미션 또는 수수료와 커미션을 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
  - 5) 다른 전문가(법인포함)와 주요한 대리인 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련 보수(수수료 또는 커미션) 내역
  - 6) 고객과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
- (403)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시 자격인증자의 객관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404) 고객과의 계약체결후에 이해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(405) 1년 이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장기고객에 대하여서는 매년 제402조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(406) 자격인증자의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.
- (407) 자격인증자는 신규고객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01조의 비밀유지 관련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또는 과거 고객의 추천을 포함하는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.
- (408) 자격인증자가 고객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수행관련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(409) 자격인증자가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체,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 또는 대리인일 경우에도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(410) 자격인증자가 법인체 또는 다른 자격인증자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고용주의

합법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411) 자격인증자는 (1) 외부의 업무협조가 있는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(2) 고용관계의 변동이나 자격인증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412) 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파트너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인증자는 재직기간 중 동료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에게 적절하고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.
- (413) FP법인의 대표 또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자격인증자는 자신의 신용상황, 능력 및 경력, 자격증명서, 법적 지위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관련 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.
- (414) 금융기관의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인 자격인증자가 동 직책을 물러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지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(415) 자격인증자가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용주 또는 파트너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보수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416) 자격인증자가 고객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, 해당 계약의 위험도, 이해상충 및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다른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500조 비밀유지 관련규칙

- (501)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관계 및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1) 고객을 위한 거래 또는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2)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에 따르는 경우
  - 3) 자격인증자 자신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위한 경우
  - 4) 고객과의 민사소송에 따른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
- (502) 자격인증자는 고용주에 대하여서도 고객의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503) 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파트너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인증자는 재직기간 중 및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는 등 동료 파트너 또는 공동 소유주에게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.

#### 제600조 전문가정신 관련규칙

- (601)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 표장을 한국FPSB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- (602) 자격인증자는 다른 금융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상호 예의를 지켜야 한다.
- (603) 자격인증자는 다른 자격인증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인증자로서의 정직성, 신뢰성 및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을 야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이를 한국FPSB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604) 자격인증자는 다른 자격인증자 또는 금융전문가가 중대한 비전문가적인 행위나 사기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계당국이나 업계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605) 자격인증자는 소속 조직내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직속상사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주에게 관련증거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 조직내에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를 포함한 업계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606)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) 법령과 관계당국의 규정 및 지침
  - 2) 한국FPSB의 제반 규정 및 방침
- (607)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, 한국FPSB의 표장 또는 자격인증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608) 자격인증자는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별도의 자격 또는 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609) 자격인증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본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(610) 자격인증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악의나 협박을 목적으로 이 규정을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611) 자격인증자는 라이선스비 납부 및 자격인증의 갱신에 따른 윤리규정준수서약서 제출 등 자격인증자의 자격유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700조 근면봉사 관련규칙**

- (701)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.
- (702) 자격인증자는 고객과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토하여

- 1) 고객의 욕구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, 또한
  - 2) 자격인증자는 고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.
- (703)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한다.
- (704)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제안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705) 자격인증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- 1) 자격인증자의 자격과 종사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규칙중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매출업무에만 종사하는 자격인증자의 경우에는 제401조의 일반적인 통보의무는 적용되나 제402조의 서면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2) CFP자격인증자와 AFPK자격인증자 등 모든 자격인증자 및 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등 자격인증 유자격자와 한국FPSB의 회원 및 한국FPSB와 체결한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윤리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 자는 이 규정의 준수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, 사회적 신뢰제고와 자부심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 (제정배경) 이 규정은 FPSB(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: 국제FP표준위원회)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채택을 권장하고 있는 미국 CFP-Board(CFP표준위원회)의 윤리 및 책임규정(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)에 바탕을 두고 있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